

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22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김경, 김기덕, 김원태,
김인제, 박승진, 성흠제,
유정희, 임만균, 최재란,
한신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서울역사 연구 활성화 및 시사편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“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”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시행 중이며, 이 중 제4조제3항은 민간위원을 “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”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.
-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 위원 위촉을 위해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던바(2023. 12. 18. 의결) 해당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민간위원은 ‘대학에서 역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「고등 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’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(안 제4조제3항)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”을 “대학에서 역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<u>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</u>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,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	<p>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대학에서 역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「고등 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-----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④ · ⑤ (생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는 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에 대해 구체화¹⁾한 것으로 통상 자격요건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지출은 없으므로 해당 규정에 의한 추가 재정 소요 발생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현

추계분석관 손재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

1) [위원회 운영비 미영향 요소] 해당규정은 위원회 운영비용의 주요 변화요소인 위원 총정원(Q)은 유지한 채 구성원 자격에 대해서 구체화한 것이므로 총비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